

DB차이나증권투자신탁 제1호[주식] 신탁계약서 변경대비표

(시행일: 2026.07.15)

변경 전	변경 후
제 17 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,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,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[중국시장과 홍콩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이를 기초로 미국 또는 영국에 상장된 DR(Depository Receipts), 미국 또는 영국에 상장된 중국지역에 본사를 둔 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에 한한다] (이하 “해외주식”이라 한다) 2.~11. (생략) ②(생략)	제 17 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 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[중국, 홍콩, 대만 등 범중국시장 관련 주식(미국 또는 영국에 상장된 주식 포함)에 한하며 이를 기초로 미국 또는 영국에 상장된 DR(Depository Receipts)을 포함한다] (이하 “해외주식”이라 한다) 2.~11. (종전과 동일) ②(종전과 동일)